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91 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윤후덕·이훈기·박주민

김정호 · 임오경 · 최기상

차지호 · 정준호 · 김주영

홍기원・박 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, 교육부,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교육시스 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중요한 상황임.

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협의·조정을 위하여 통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·교육부·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 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, 학교 운영 경비 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,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교육지원) ① ~ ③ (생	제24조(교육지원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
	3항까지에 따른 보호대상자의
	교육 지원, 학교 운영 경비 지
	원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
	사항 등을 협의·조정하기 위
	하여 기획재정부, 교육부 및 여
	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
	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
	<u>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
	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